

# 집유관련 행정조치 위헌제기의 배경



박 재 호

경북 낙농협동조합 조합장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무지랭이 같이 힘없는 농민이라지만, 밟혀 죽을 지경에 이르면 참기만은 할수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생존권을 무작정, 유업체나 행정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었기에 자구적 노력으로 스스로 뭉쳐 생겨난 전국 18개 신생 낙농협동조합들이 더는 묵과할수없어 의논 끝에 소위 집유질서 유지란 미명하에 취해진 1·15행정조치의 위헌여부를 가려보자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함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 반응은 구구각색 이어서 또 한번 무력한자의 비애를 통감케 한다. 격려와 찬사를 보내오는 낙농가가 있는가 하면, 어제까지도 온통 고발조치해야 된다고 야단법석을 떨던 같은 낙농가이면서도 시큰둥하는 반응이기도 하

고, 조치를 위한 당국자의 부정적 과잉반응은 당연하다 치더라도, 생산자 단체들의 시각차와 여론 호도적 매도는 우리를 당혹케 한다.

낙농가 때려잡는 이같은 조치가 일방적으로 취해졌을 때 그래도 본 협의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는 찾아가거나 당사자를 불러놓고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요청했었다. 그런데도 수수방관만 해오던 일부 권위 있는 생산자단체들은 어렵게 비용을 마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원함에 이른 이제와서 낙농문제를 크게 걱정하는 척하며 간섭을 하려 드는데는 그 진의가 어디 있든간에 솔직히 말해서 불쾌감을 감출길 없는 것이다.

농림수산부의 어떤 과장이 취임하자 마자 찾아간 낙농단체대표들에게 『지난 수년간, 낙농가든 정책 당국이든 해 놓은것이 무엇이 있는가』고 헐책조의 고성을 높인바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선임자나 상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권리보장을 위해 그 존재가치가 있는것이지, 조합만의 발전을 위하여 있거나 더욱이 임직원을 위한 존재는 아닐줄 안다.**

**또 협동조합의 이념이 일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일인을 위함에 있을진데 해당조합원의 권익은 물론 여타 동업자에도 더불어 잘 살아갈수 있는 정신이 바탕되어야 한다**

급자를 원망하는 듯도 했으나 이제야말로 낙농문제를 제대로 끌어갈 참 주인을 만났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받아 들였던 것이다. 그후 지금까지 살펴보건데 큰소리 칠만도 하다는 느낌이다. 다만 낙농가 잡는 일이 되어서 그렇지, 분유가 쌓인다고 역할분담을 내세워 국고까지 축내가면서 젖소 패려잡는 시책을 뒀고, 그러다가 원유가 부족하게 되니 역할분담은 어딜가고 생산자 대표와는 상의도 없이 1·15조치를 취한데 뒤이어 분유 수입용단(?)을 내렸으니 말이다.

상황변화가 어떻게 사정이야 어찌 되었던간에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면 책임질 줄도 아는 공직자가 있을 때 나라의 앞날, 농촌의 앞날이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이 든다. 그럼에도 문제를 제기하자 일련의 움직임들이 여론을 오도하거나 상황을 호도하듯 보이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 집유일원화 작업의 낙농 진흥법 개정이 어렵게 된다』는 이론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들려온다. 그말따라 생각해보자.

우유의 특수성때문에 사유재산권이 약간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감한다. 하지만 입법에 고를 거친 낙진법 개정안이 부처간 의견조성 과정에서 늦어지는 이유중의 하나가 위헌문제라고 강조를 해왔지 않는가, 소원제기와 관계없이 위헌이 전제된 입법이나 법 개정은 이루어질수 없는 것이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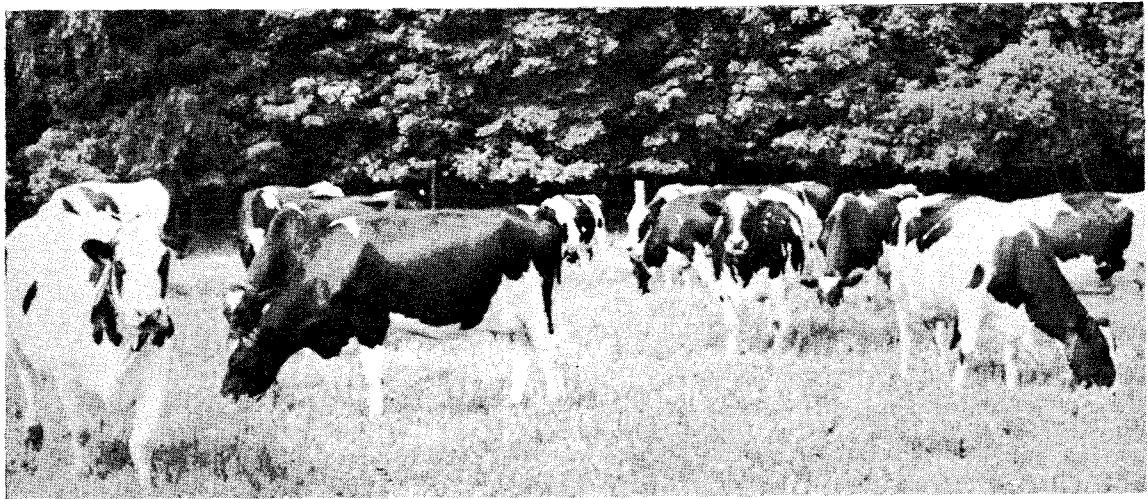
식인 것이고, 또 일원화에 뜻이 있는한 위헌이 아니면서도 일원화를 유도할수 있는 법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법에 의한 집유일원화는 추진하면 되는것이다. 법도 아닌 행정조치로 농가만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행정만능주의는 이제 이땅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이다.

또, 앞으로는 협동조합이든 생산자단체이든 참여와 운영을 강제성을 띤 법이나 제도로 묶으려 할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바탕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권리보장을 위해 그 존재가치가 있는것이지, 조합만의 발전을 위하여 있거나 더욱이 임직원을 위한 존재는 아닐줄 안다.

또 협동조합의 이념이 일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일인을 위함에 있을진데 해당조합원의 권리은 물론 여타 동업자에도 더불어 잘 살아갈수 있는 정신이 바탕되어야 한다고 생각할때 거구를 자랑하는 선배 우유조합들이 완벽한 기여를 하여오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고 묻고싶다.

진정 이나라 낙농업을 걱정하고 책임지고 나가겠다면 이천, 여주, 양평낙협들의 문제부터 풀어놓아야 하지 않을까? 이들 이해상반상태에 있는 모임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찾아 자료제출 협조는 고맙게 생각되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언질을 주거나 주도적 역할을 맡는듯한 인상은 오늘의 난제를 풀어가는데는 역효과도 나타낼수도 있을 것이라. 그리고 진



정 이나라 낙농협동조합의 공존과 평준화를 바란다면 이웃 영세조합의 어려움을 모험을 걸고서라도 덜어줄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외면 한채 오히려 힘을 앞세워 조합원을 빼아가는 큰 조합도 있다고 들리니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꼬집어 보는 것이다.

1976년 11월 집유선동결의 행정조치로 낙농가만 묶어놓고 힘있는 유업체는 그동안 입식기반이 전혀 없던 숱한 업체들이 그야말로 능력껏 무더기로 뺏아가도 조치위반의 제재조치는 고사하고 도투락주)이 남양유업(주)에 인수될때나 오리온(주)이 건국우유로 양도될때의 경우에서와 같이 농가가 물건처럼 무더기로 홍정의 대상이 되어 팔려넘어가도 그때의 동결조치가 철회된 사실이 없다면 새로운 시정명령이라도 취해져야 함이 상식인데 수수방관 직무를 유기해온 당국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이같은 1·15조치를 대안없이 취한다면 당하는자 입장에서 어디에 호소해야 할 것인가. 때리는자, 구경하는자의 느긋한 자세에 비해 당하는자로서는 피가 꺼꾸로 흐르는 심정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조합원이 자기재산인 원유를 자기조합의 원유 공

동판매 사업에 출하를 하겠다고 동의해 수집하여 판매하겠다는 데 집유하던 유업체가 그우유는 내우유이니 내가 집유를 해야지 조합이 집유해오면 살 수 없다고 버티고, 다른조합이나 유업체에 팔려고 싣고가면 1·15조치 위반이라고 고발하겠다는 솟장이 날아가고, 회원조합끼리 돋겠다고 나서니 중앙회가 못하도록 하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불법으로 집유한 원유는 판매할 수 없으니 처벌하겠다고 달려드니 눈이 있고, 귀가있고, 판단하는 양식이 있다면 이것이 최선의 길이요, 행정조치라고 말할 수 있는건지 감히 묻고 싶다.

중앙회는 회원조합, 비회원 조합, 불법위법을 따지기에 앞서 협동조합이 육성발전 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에 발벗고 나서야 할것이요, 당국은 패深层次, 적용에 앞서 패深层次를 저지를수 밖에 없었던 원인제거에 성의를 보여야 할것이며, 자칭낙농업계 지도자라 하는 모두는 세력확장이나 기득권 유지에 연연하지 말고 납득할만한 행동을 취하여 우리 모두 진정 마음을 비우고, 이나라 낙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다짐하는 반성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란다.